

<적합성평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안내>

전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기기가 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는 해당 제품과 포장에 반드시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6항)

○ 1차 위반 시는 시정명령, 2차 및 3차시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1~2개월)

2. 적합성평가기준 관련 변경, 파생모델명, 제조자, 상호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

○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 : 1차 위반 시는 시정명령, 2차시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2개월), 3차시 적합성평가의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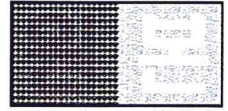
○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 1차, 2차 및 3차 위반 시 각각 시정 명령

3.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일부 부품을 무단변경 또는 제거하여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를 유통하거나, 시험과정 중 기기의 회로 및 구조를 보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보완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시험결과 부적합기기는 시정 여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유통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차시는 생산·수입·판매 중지 또는 사용중지(2개월), 3차시 적합성평가의 취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Registrant	(주)아이디스
기기 명칭 Equipment Name	DVR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IDR7932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KCC-REM-ID1-IDR7932-P8H61
제조사/ 제조국가 Manufacturer/ Country of Origin	(주)아이디스/한국
인증연월일 Date of Registration	2012년(Year) 02월(Month) 29일(Date)
기타 Others	

위 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2012년(Year) 02월(Month) 29일(Date)

국립전파연구원장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